#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1. 서론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는 이전의 GATT 체제와 달리 더욱 강력한 형태의 협정 이행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분쟁해결 절차가 WTO에 내 재되어 있다. WTO는 분쟁해결이 다자 무역체제의 중심 축(central pillar)으로 평가한다 (WTO 2015). 분쟁해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기반을 둔 무역체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한 WTO의 모든 절차는 법 규정을 중시함으로써 다자 무역체제를 더욱 투명하고 안정되며 예측 가능 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WTO 체제 안에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기구는 이른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이다. DSB는 WTO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급(ambassadorial level) 회의 인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의 한 세션으로 제도화되어 있다.1) DSB는 분쟁 패널 (Panel)과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권고하거나 채택한 보고서의 결과를 심의하고 채

<sup>\* (</sup>songsooc@gmail.com).

<sup>1)</sup> 일반이사회는 WTO의 가장 높은 의사결정 기구임. 보통 2년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를 대신하여 각 회 원국의 대시급 대표들이 매월 모여, WTO 일상의 의제들을 논의함. 이 밖에도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귀(DSB)와 무역정책 검토 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로서 기능이 있음. 일반이사회가 다루는 의제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goo.gl/TKlzw7),

택 여부를 결정한다. DSB의 의사결정은 GATT와 달리 역총의(逆總意, reverse consensus) 방식을 따른다. 즉 패널의 권고나 상소기구의 수정 보고서의 채택을 반대하는 총의 또 는 만장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한 DSB가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다.2)

분쟁 패널은 법정과 비슷하다. 패널 위원(panelists)은 당사국의 협의 과정에서 선정되는데, 양측이 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WTO 사무총장이 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패널은 보통 3명으로 구성되며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보통 패널 위원은 WTO 사무국이 관리하는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회원국들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패널은 서로 다른 나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해 당사국들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을 검토한 후평결하게 된다.

분쟁의 시초는 약속 불이행이다. 한 회원국이 WTO 무역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이에 대응하여 다른 회원국들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로써 대응 또는 보복하기보다 법리 해석 절차를 밟아 그 위법 사항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분쟁해결이다. 이전 GATT 체제와 비교하여 WTO 분쟁해결 절차의 특징은 시한이 정해져 있으며, 재판 결과의 채택 거부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한은 탄력적이나 보통 1년에 완료되며, 만약 상소되었을 경우 15개월 정도이다.

상소는 제소국과 피소국이 각각 또는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법 규정의 해석에 국한한다. 이에 따라 패널이 논의한 증거를 다시 검토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심의하지 않는다. 상소기구는 상설기구로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임기는 4년이다. 상소기구 위원은 다양한 국가를 대표하고 특정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않은, 법과 국제무역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이다. 3) 각 상소사건에 대해 3명의상소기구 위원이 배정된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내린 평결과 결론을 옹호하거나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있다. 상소절차는 보통 6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90일로 절대 시한이 정해져 있다. DSB는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30일 안에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대로 거부는 역총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분쟁해결 절차의 단계와 시한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패널이 구성된 후 절차와 단계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sup>2)</sup> 사실 재판에서 승소한 회원국이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 지명하므로 DSB의 채택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음. 이전 GATT 체제하에서는 총의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방식이었으므로 재판에서 패소한 회원국이 반대할 경우그 결과가 채택되지 않음. DSB가 아닌 다른 WTO 기구들은 보통 총의 방식에 따라 합의를 도출함.

<sup>3) 2015</sup>년 현재 상소기구의 위원은 미국 1명, EU 1명, 아프리카 2명, 아시아 2명, 남미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분쟁해결 절차의 단계와 시한

| 단계         | 소요 시한                         | 단계                     |               |  |  |
|------------|-------------------------------|------------------------|---------------|--|--|
| 1          | 60일                           | 당사자 간 협의, 중재 등         |               |  |  |
|            |                               |                        | 1차 공판 전       | 분쟁 당시국들이 지국의 주장을 서면으로 패널에 제출   |  |
|            |                               |                        | 1차 공판         | 제소국과 피소국 및 분쟁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표방한<br>제3국(third parties)이 각각 의견 개진   |  |
|            |                               |                        | 2차 공판         | 당시국들이 서면으로 반증(rebuttals)을 제시하고 구두로<br>논의 전개  |  |
|            | 45일                           | 패널 구성과<br>패널 위원의<br>임명 | 전문가 협의와<br>검토 | 만약 한쪽 당시국이 과학 또는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br>제기할 경우 관련 전문기와 협의하거나 전문가<br>검토단을 임명하여 지문보고서를 준비                          |  |
| 2          |                               |                        | 초안            | 패널은 사실과 논쟁사항을 서술한 보고서를 제소국과<br>피소국에 전달하고 2주 간 의견을 수렴. 이 보고서에는<br>평결(findings)과 결론(conclusions)이 포함되지 않음. |  |
|            |                               |                        | 중간보고서         | 패널이 평결과 결론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제소국과<br>피소국에 제시하고 1주일 간 검토할 것을 요청   |  |
|            |                               |                        | 검토            | 검토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기간에<br>패널은 당사국들과 추가 회의를 가질 수 있음.   |  |
|            | 180일                          | 최종 패널 보고서들 당시국에<br>배포  |               | 만약 관련 분쟁조치가 WTO 협정이나 의무시항을<br>위반한 것으로 패널이 결정한 경우 해당 초지를 WTO  |  |
|            | 21일 최종 패널 보고서를 WTO<br>회원국에 배포 |                        |               |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  |
|            | 60일                           | DSB의 패널                | 보고서 채택        | 패널 보고서가 규정이 됨  |  |
| 상소 할<br>경우 | <u>할</u> 60∼90일 상소기구 보고서      |                        | 구 보고서         | <ul> <li>상소 통보</li> <li>문서로 의견 개진</li> <li>공판</li> <li>견해 교류</li> <li>상소기구 보고서의 회람</li> </ul>            |  |
|            | 30일                           |                        | DS            | B의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  |

자료: WTO(https://goo.gl/BSoZt3).

패널과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되어야 한다. 만 약 즉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적절한 시한(reasonable period of time)이 허용되는데 보통 15개월이 주어진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당사국이 이 의를 제기할 경우 이행 패널(compliance panel)이 설치되어 보상(compensation) 또는 양허 의 유예(suspension of concessions) 형태로 임시조치, 이른바 보복(retaliation)이 허용된다. 본고에서는 농식품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WTO 무역 분쟁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은 WTO에 제기된 농식품과 관련된 무역 분쟁의 동 향을 제시한다. 제3장은 2015년에 평결되거나 제기된 두 가지 분쟁사례를 깊이 있게 다룬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5월 29일에 WTO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는 5월 21일에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및 방사성핵종(放射性核種, radionuclides)<sup>4)</sup>에 관한 검사와 인증 요건에 관한 것이다. 끝으로, 제4장은 시사점과 결론이다.

## 2. 무역 분쟁사건의 동향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이후 2015년 6월 현재 총 496건의 무역 분쟁이 제기되었다 <표 2 참조>. 1995~2004년에 연평균 분쟁사건 수는 24건이다<그림 1 참조>. 1997년에 50건을 정점으로 2011년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분쟁사건 수는 2012년에 27건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또는 WTO의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과 직접 관련된 분쟁사건도 1997년 14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래 안정세를 보여 1995~2004년 연평균 분쟁사건 수는 4건으로 WTO 모든 부문의 분쟁사건 수에서 1/6 정도를 차지한다. 이처럼 분쟁사건 수가 WTO 체제의 초기와 견주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분쟁해결 경험이 축적되면서 법 규정의 해석이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5)

분쟁 사건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사건은 제소 17건, 피소 15건 등 총 32건이다. 농업부문에 국한한다면 한국이 피소된 사건은 농산물 검사와 검역 조치(DS3, DS41), 식품유통기한(DS5), 쇠고기 수입조치(DS161, DS169, DS391), 혼합분유 조치(DS98) 등 7건이다. 6) 반면에 한국이 농산물과 관련해 WTO 회원국을 제소한 사건은 일본의 김 수입쿼터(DS323) 1건에 불과하다.

표 2 WTO 무역 분쟁사건의 현황

| 구 분  | 건 수 | 한국이 관련된 분쟁사건   |
|--|-----|--|
| 협의가 요청되었으나, 패널이 설치되지 않은<br>사건으로 철회되거나 서로 합의에 이르렀다고<br>통보되지 않은 사건 | 151 | DS3: 농산물 검사와 검역에 관한 조차-미국 제소 DS41: 농산물 검사와 검역에 관한 조차-미국 제소 DS215: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에 관한 필리핀의 반 덤핑 조치 DS307: 상업용 선박에 관한 BJ의 보조 DS495: 방사성 핵종에 관한 수입 금지, 검사 및 인증 요간일본 제소 |

<sup>4)</sup> 핵 내에 불안정한 수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포함하는 핵종으로서 방사성 붕괴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함.

<sup>5)</sup> 농업협정이래 무역 분쟁 시건들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최승환(2004) 참조

<sup>6)</sup> 괄호 안의 번호는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코드로 1995년 첫 사건에 부여된 1부터 순차적으로 매겨짐.

## 표 2 WTO 무역 분쟁사건의 현황 (계속)

| 구 분   | 건 수 | 한국이 관련된 분쟁사건  |
|---|-----|---|
| 패널이 설치되었으나 패널 위원이 정해지지<br>않은 시건                           | 25  | DS420: 철강판재류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br>DS488: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
| 패널 위원이 정해졌으나 패널 보고서가<br>채택되지 않았거나 철회 또는 합의가<br>통보되지 않은 사건 | 19  | DS464: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덩핑과 상계관세 조치   |
| 패널 보고서가 상소되어 심의 중인 시건                                     | 3   |   |
| 상소기구 보고서가 회람 중인 사건  | 1   |   |
|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나 피소국의 추가 조치가<br>필요하지 않은 사건                     | 28  | DS163: 신공항 건설공단의 정부조달 관련 조치-미국 제소<br>DS251: 철강제품에 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
| 보고서가 채택되고 정책변경이 권고된 사건                                    | 32  |   |
| DSB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책조치를<br>수정하였다고 통보된 사건                      | 88  | DS75: 주서-EU 제소 DS84: 주서-미국 제소 DS98: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조차-EU 제소 DS16: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차-미국 제소 DS169: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차-미국 제소 DS179: 스테인리스스틸에 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DS202: 탄소강관에 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DS273: 상업산박 무역에 관한 조차-EU 제소 DS296: DRAW에 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 DS299: DRAW에 관한 EU의 상계관세 조치 DS402: 반덤핑 조치 시 미국의 제로잉(zeroing) 사용 |
| 당시국 간 합의를 통해 이행이 통보된 사건                                   | 23  | DS99: DRAM에 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br>DS301: 상업선박 무역에 관한 EU의 조치   |
| 이행 패널이 진행 중인 사건   | 5   |   |
| 이행 패널이 완료되었으나 불이행 평결이<br>이뤄지지 않은 사건                       | 2   |   |
| 이행 패널이 완료되고 불이행으로 평결된<br>사건                               | 6   | DS312: 제자에 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인도네시아 제소  |
| 불이행에 따른 보복이 요청된 사건  | 4   |   |
| 불이행에 따른 보복이 승인된 사건  | 4   | DS217: 미국의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  |
| 패널 절차가 중단된 후 12개월 이내 재개되지<br>않은 시건                        | 11  | DS336: DRAM에 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
| 해결되거나 종료(철회 또는 상호 합의된 사건                                  | 94  | DS55: 식품유통기한에 관한 조차-미국 제소<br>DS20: 생수제품 관련 조차-캐나다 제소<br>DS40: 통신장비 조달 관련 법령, 규제 및 관행-EU 제소<br>DS89: 칼라TV에 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br>DS323: 일본의 김 수입 쿼터<br>DS391: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차-캐나다 제소   |
| 합 계   | 496 |   |

지료: WTO(https://goo.gl/26K3SC), 신업통상자원부(http://ftahub.go.kr/main/support/wto/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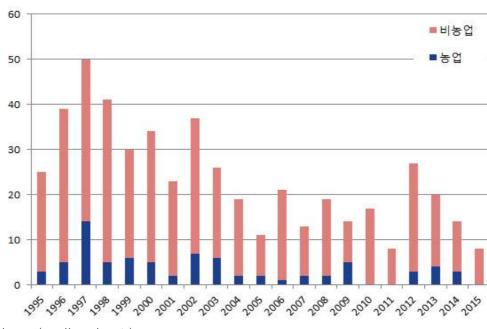


그림 1 WTO 무역 분쟁사건 수의 추이

자료: WTO(https://goo.gl/QguB94).

패널 평결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 쇠고기 수입조치(DS161, DS169)와 혼합분유 조치 (DS98)는 사실상 한국이 패소함으로써 관련 국내 규정이나 조치를 WTO 규정에 맞게 수정하게 되었다(WTO 2015a; 2015b). 나머지 사건들 중 농산물 검사와 검역 조치(DS3, DS41)는 협의 요청 후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고, 식품유통기한(DS5)과 쇠고기 수입조치 (DS391) 및 김 수입쿼터(DS323)는 양자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었다.

# 3. 농산물 무역 분쟁 사례

여기서는 2015년에 드러난 WTO 무역 분쟁사건 중 농업부문, 수산물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고 무역규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한다. 첫 번째 사례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시제에 관해 제소한사건이다. 이는 미국이 WTO 상소기구가 평결한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복을 요청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제소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수산물 등 식품수입 금지와 검사 요건에 관한 분쟁이다.

#### 3.1. 미국의 육류에 관한 원산지 표시제

#### 3.1.1. 분쟁 배경

2008년 12월 1일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가축과 육류에 관한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소하였다. 이 사건은 일련의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2015년 5월 18일에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회람되었다<표 3 참조>.

문제가 된 미국의 COOL 제도는 판매제품에 부착된 표시를 통해 육류의 수입국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2008년에 의무화한 것이다(Bridges 2012).7) 이후 미국이 WTO 분쟁에서 패소하자 상소기구 평결에 따라 그 규정을 수정하였다. 2013년에 수정도입된 COOL 조치는 각 생산단계의 원산지를 표기, 다른 국가 원산지의 식육 혼합 (commingling of muscle cuts)의 불허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2015년 5월 WTO 상소기구는 수정된 COOL 조치가 여전히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표 3 WTO 무역 분쟁사건의 현황

| 제목          | DS384   | DS386   |  |  |
|-------------|---|---|--|--|
| 제소국         | 케나다   | 멕시코   |  |  |
| 피소국         | 미국  | 미국  |  |  |
| 제3국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br>콜롬비아, EJ, 과테말라, 인도, 일본,<br>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대만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br>중국, 콜롬비아, EJ, 과테말라, 인도,<br>일본, 한국, 뉴질랜드, 페루, 대만 |  |  |
| 관련 협정       | GATT 1994; 원산자규정, SPS 협정, TBT 협정  |   |  |  |
| 협의 요청일      | 2008년 12월 1일  | 2008년 12월 17일   |  |  |
| 패널 보고서 회람   | 2011년 11월 18일   |   |  |  |
|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 | 2012년 6월 29일  |   |  |  |
| 중재 보고서 회람   | 2012년 12월 4일  |   |  |  |
| 패널 보고서 회람   | 2014년 10월 20일   |   |  |  |
|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 | 2015년 5월  | 월 18일   |  |  |

자료: WTO(https://goo.gl/Eyd1Wi; https://goo.gl/cZNYed).

처음부터 캐나다의 육류산업은 미국의 COOL 조치가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고 반대 하였다. 예를 들면, 캐나다 비육우협회(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 CCA)<sup>8)</sup>는 COOL

<sup>7) 2002</sup>년 농업법(Farm Bill)에 표시제 요건이 명시되었으나 축산물에 대해서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함. 이에 2009년 3월부터 처음으로 축산물에 대한 의무 표시제가 시행됨.

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소 1두당 25~40달러에 이르며, 연간 총 1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육류산업》도 COOL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 조치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장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였다. 참고로 2014년에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200만 두 이상의 생우를 수입하였다. 돼지의 경우 약 500만 두가 캐나다로부터 수입되었다(Wall Street Journal 2015).

이와 반대로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COOL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정치권에 로비하였다. 예를 들면 소비자 연맹(Consumers Union)<sup>10)</sup>은 설문 결과를 소개하면서 육류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원산지 표시를 원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Food & Water Watch<sup>11)</sup>는 훈제 또는 열처리된(processed) 가공육의 경우 표시제에서 제외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COOL 제도에 근거한 표시는 5개 범주로 구분되고 각 항목은 다시 3개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A" 표시를 받으려면 소는 미국에서 태어나(born) 비육되고(raised) 도축되어야(slaughtered) 한다.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미국 안에서 비육되고 도축된 육류

|    | 생산 단계               |              |      |                 |   |
|----|---------------------|--------------|------|-----------------|---|
| 범주 | 출생                  | 비육           | 도축   | 즉시 도축을<br>위한 수입 | 표시 방식   |
| А  | 미국                  | 미국           | 미국   | NA              | "미국에서 나고 지라고 도축"<br>(Born, Raised, and Slaughtered in the U.S.A.)                     |
| А  | 알래스카,<br>하와이        | 알래스카,<br>하와이 | 미국   | NA              | "미국에서 나서 자라고 도축"  |
| В  | 국가 X<br>(Country X) | 미국           | 미국   | 아니오             | "국가 X에서 나고 미국에서 자라고 도축 "<br>(Born in Country X, Raised and Slaughter in the U.S.A.)   |
| С  | 국가 X                | 국가 X         | 미국   | 예               | "국가 X에서 나서 자라고, 미국에서 도축"<br>(Born and Raised in Country X, Slaughtered in the U.S.A.) |
| D  | 국가 X                | 국가 X         | 국가 X | 아니오             | "국가 X 제품"<br>(Product of Country X)   |

표 4 미국의 육류제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 방식

주 1. 범주 A은 미국 원산자, B는 여러 국가 원산지, C는 즉시 도출을 위한 수입, D는 외국산임

<sup>2.</sup> 해당 육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염쇠고기임.

자료: 미국 농무부(http://goo.gl/eY6Udo).

<sup>8) (</sup>http://cattle.ca/).

<sup>9)</sup> 예: 전국 쇠고기 생신자 연합(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

<sup>10) (</sup>http://www.consumerreports.org/).

<sup>11) (</sup>http://www.foodandwaterwatch.org/).

는 이를 그렇게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생애 요건이 섞인 경우 최종제품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복잡한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표시 "A"와 "B"의 요건이 섞였을 경우 언제 어디서 혼합되었는지에 따라 최종제품의 표시가 "B" 또는 "C"가 되기도 한다. 또한, 표시 "A"와 "C"가 혼합된 경우 "B"로 표시되기도 한다. 표시 "B"는 "미국산, X 국가(product of the US, Country X)"이고 표시 "C"는 "X 국가산, 미국(product of Country X, the US)"으로 표현되므로 그 구분이 어렵다<표 4 및 그림 1 참조>.

COOL 요건을 충족하려면 생산농가는 소와 돼지의 생애 요건이 혼합되는 것을 관찰 하고(monitoring) 분리해야(segregation) 한다. 반면 미국 안에서 태어나 비육되고 도축된 육류에는 이런 관찰이나 구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COOL 조치가 국내 산과 수입산 간의 차별이란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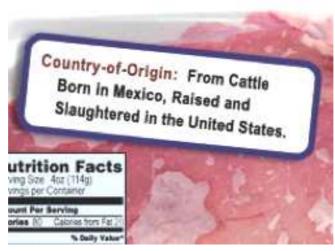


그림 2 미국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사례

주: 원산지 표시는 "멕시코에서 나고 미국에서 비육되고 도축됨" 으로 되어 있음. 자료: Made in America Movement(http://goo.gl/9ml2nn).

#### 3.1.2. WTO 평결

일련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는 미국의 COOL 제도가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에 해당하며, 그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시하 였다. WTO 규정에 근거한 주요 평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TBT 협정 제2조 1항: 내국민 대우 - 기술규정

COOL 조치가 국내 가축보다 수입 가축에 불리한 대우를 부과함으로써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원칙을 위반하였다. 곧 동종상품(like product)을 차별한 것이다. 이는 국내산 제품을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창출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 가축의 기회를 저해하였다. 또한 기록 관리와 증명 요건의 부담을 상방(upstream) 생산 자와 가공업체에 과도하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TBT 협정 제2조 제2항: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

패널은 COOL 조치가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나, 그 법적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상소기구는 COOL 조치가 완전히 또는 어떤 최소 수준 이상으로 그 목표를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TBT 협정 제2조 2항의 위반을 판시한 패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곧, 상소기구는 COOL 조치가 법적 목표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3) TBT 협정 제2조 4항: 국제 기준 패널은 표시제에 관한 국제기준으로서 멕시코가 거론한 CODEX-STAN 1-1985가 미국 이 자국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이행하는 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12)

이와 같은 WTO의 평결 이후 캐나다는 연간 30억 캐나다 달러,<sup>13)</sup> 멕시코는 6억 5,300만 달러<sup>14)</sup> 상당의 무역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CCA 2015). 캐나다의 무역보복은 미국산 수입제품에 최대 100%의 보복 관세를 매기는 형태로 이뤄질 텐데, 대상 품목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과실, 채소, 곡물, 파스타, 초콜릿, 제과 제품, 조제식품, 보석, 주류, 포도주, 가구 등이다. 멕시코의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CBS News 2015).

이러한 위협은 미국 측의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 냈다. 2015년 6월 10일에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찬성 300대 반대 131의 투료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철폐하기로 결의하였다(Reuters 2015). 실질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COOL 조치에 의해 초래되는 추가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소비

<sup>12)</sup> CODEX-STAN 1-1985의 원산지 표시 규정(4.5항)은 첫째 원산지 표시의 생략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거나 기만하는 결 괴를 초래할 경우 표시해야 하며, 둘째 다른 나라에서 가공되어 식품의 본성(nature)이 변한 경우 가공이 이루어진 나라가 원산지 국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http://goo.gl/s7Hb.W).

<sup>13)</sup> 약 2조 7,000억 원

<sup>14)</sup> 약 7,200억 원

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표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상원(Senate)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이익단체 간의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 3.1.3. COOL 쪼치의 경제 효과

미국 농무부는 COOL 정보가 소비자의 관심사항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 계측 가능한 경제이득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USDA 2015). 또한 "미국산"으로 표시 된 식품의 구매가 증가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표 5>은 2009년에 개정된 COOL 조치에 소요되는 이행 첫해 비용을 제시한 두 연 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현(縣)                   | 연구 A               | 연구 B                                |  |  |  |  |  |
|------------------------|--------------------|-------------------------------------|--|--|--|--|--|
|                        | 쇠고기                |                                     |  |  |  |  |  |
| 생산자                    | 9.00달러/두           | 비육우: 0,25달러/두<br>도축우: 0,25~0,75달러/두 |  |  |  |  |  |
| 중간 유통업자                | 0.015달러/lb. (도체중량) | 0.25~14.00달러/두                      |  |  |  |  |  |
| 소매업자                   | 0.07달러/lb. (소매중량)  | 0.031~0.159달러/lb.                   |  |  |  |  |  |
| 돼지고기                   |                    |                                     |  |  |  |  |  |
| 생산자                    | 1,00달러/두           | 0.05~0.375달러/두                      |  |  |  |  |  |
| 중간 유통업자                | 0.015달러/lb. (도체중량) | 0.05~5.50달러/두                       |  |  |  |  |  |
| 소매업자 0.04달러/lb. (소매중량) |                    | 0.000075~0.053달러/lb.                |  |  |  |  |  |
| 닭고기                    |                    |                                     |  |  |  |  |  |
| 생산자                    | 0달러                | NA                                  |  |  |  |  |  |
| 중간 유통업자                | 0.005/lb.          | 0달러                                 |  |  |  |  |  |
| 소매업자                   | 0,0025/lb.         | 0달러                                 |  |  |  |  |  |

표 5 미국 COOL 조치에 따른 이행 비용

연구 A와 B 사이에 정책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산출되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농가수준에서 소의 경우 연구 A가 두당 9달러인 반면 연구 B는 비육우와 도축 우를 합쳐서 두당 1달러로 제시되었다. 특히 미국산과 수입산이 혼재된 쇠고기와 돼지 고기의 비용을 분리해 산출한 연구 B에 따르면, 수입산이 혼재된 경우가 그 이행비용 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OL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이 수입산에 차별적으로 과

주: 1. 연구 A는 정책이행 비용을 산출한 정보의 연구결과이며, 연구 B는 민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임.

<sup>2.</sup> 범위로 주어진 수치 중 낮은 것은 미국산이고 높은 것은 수입산이 포함된 것임. 자료: USDA(2015).

도하게 부과됨을 시사한다.

닭고기의 경우 연구 A는 농가수준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유통단계로 가면서 소액의 이행비용이 나타남을 보인다. 반면에 연구 B는 공급망의 모든 유통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3.2. 한국의 수입금지 및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검사와 인증 요건

#### 3.2.1. 분쟁 배경

2015년 5월 21에 일본은 한국의 수입금지 및 방사성핵종에 관한 검사와 인증요건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다.<sup>15)</sup>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 후쿠시마(Fukushima) 다이치(Daiichi) 원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이 취한 다음과 같은 무역 조치에 대해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① 일본의 13개 현(縣)에서 생산된 26개 농산물의 수입 금지<표 5 참조>
- ② 세슘(cesium) 134 또는 137, 또는 요오드(iodine) 131 등 방사성 핵종이 특정 식품에 서 검출된 경우 다른 방사성 핵종에 관해 추가 검사와 인증요건을 부과

표 5 일본 농산물에 관한 수입금지 조치

| 현(縣) | 품목   |
|------|--|
| 후쿠사마 |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 고시리, 매실,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br>고비, 고시리, 대두, 팥 |
| 네지   | 업채류, 엽경채류(이시하시, 카토리시, 타코마차시 한정), 차, 버섯류, 죽순  |
| 도치기  |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두릅, 죽순, 청나래 고시리, 산초, 오가피, 고비, 고시리, 밤                               |
| 군마   |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차, 버섯류, 죽순, 오기피   |
| 가나기와 | 차  |
| 1400 | 버섯류, 청나래 고시리, 죽순, 오가피, 고비, 메밀, 대두, 쌀   |
| 이오터  | 버섯류, 오가피, 과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메밀, 대두   |
| 나가노  | 버섯류  |
| 세괴에시 | 버섯류  |
| 시시대0 | 버섯류  |
| 아오모리 | 버섯류  |
| 시즈오카 | 버섯류  |

자료: 식품의약품인전체(2014); 황윤재·이동소(2014).

<sup>15) (</sup>WTO 2015c, DS495).

또한 일본은 2013년 7월에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상당량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그해 9월부터 무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① 일본의 8개 현에서 포획 또는 이 지역을 거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그 림 3 및 표 6 참조>
- ② 세슘이나 요오드 131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금지 대상이 아닌 일본의 모든 식품에 대해 세슘과 요오드 이외의 스트론튬(Sr)과 플루토늄(Pu) 등 다른 방사성 핵종을 추가로 검사하고 인증토록 하는 요건 부과
- ③ 가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슘 검출 상한치를 370Bq/kg에서 100Bq/kg으로 강화<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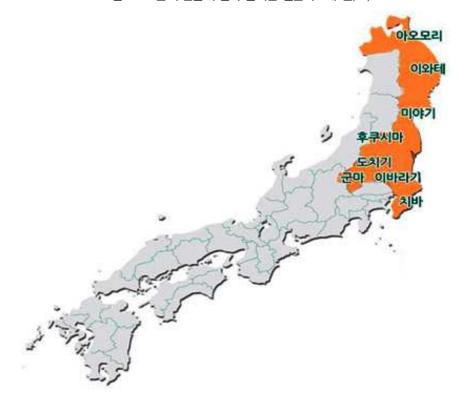


그림 3 모든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8개 현(縣)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등(2013).

<sup>16)</sup> 베크렐(Becquerel: Ba)은 방사능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국제단위임. 1초에 방사성 붕괴가 한 번 나타날 때가 18q임. Ba 에 관한 CODEX 권장기준은 1,000 Ba/kg이나, 미국은 1,200 Ba/kg, 만는 500 Ba/kg 등 국기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됨.

표 6 모든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8개 현(縣)

| 현(縣) | 이전 수입금지 품목   | 현행 조치 |
|------|--|-------|
| 후쿠시마 | 잉어, 붕어, 쥐노래미 및 홍기자미, 서대, 돌기자미, 불볼락, 망상어, 물기자미,<br>누루시볼락, 흑대기, 조피볼락, 감성돔, 삼세기, 홍어, 송어, 양볼락, 명태, 농어,<br>민어, 강도다리, 찰기자미, 졸복, 넙치, 성대, 범기자미, 붕장어, 참기자미,<br>문치기자미, 양태, 대구, 개볼락, 도다리, 비너스백합, 둥근성게, 날개줄고기류,<br>돌대구류, 노랑기자미 및 장쟁이, 별상어, 뱀장어, 매리복, 학공치 |       |
| 0비타키 | 뱀장어, 홍어, 돌가자미, 파슬리, 대구   |       |
| 군마   | 산천어, 곤들매기  | 모든    |
| 1400 | 곤들매기, 넙치, 감성동  | 수산물   |
| 이와테  | 대구, 곤들매기, 황어, 농어, 감성돔  |       |
| 도치기  | 고비 및 황어, 곤들매기, 산천어:  |       |
| 치바   | 붕어   |       |
| 아오모리 | 대구   |       |

자료: 정민정·장영주(2015).

일본은 한국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무역조치를 취했음에도 그에 관한 자세한 근거와 정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한국의 전문가와 소비자 그룹이 일본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일본 수산물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양국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도 공동조사를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관련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무조정실 등 2015).

- ①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수산물 등에 관해 수입규 제 조치를 취한 것,
- ② WTO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은 유감스 러운 일임.

농수산물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쌍방 무역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가리비, 명태, 고등어, 대구, 꽁치, 문어, 오징어, 멸치 등을 수입하는 반면에 광어, 굴, 김 등을 일본에 수출한다(하상도 2015).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검출 농도는 대부분 10~20Bq이므로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수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방사능 유출 사건의 여파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7 참조>.

표 7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관한 가계지출 변화 추이

| 항목                        | 2010(a) | 2011 | 2012 | 2013(b) | (b)-(a) |
|---------------------------|---------|------|------|---------|---------|
| 월 평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br>비중(%) | 100     | 99   | 91   | 87      | -13     |
| 식료품비 대비 지출 비중(%)          | 11,0    | 11,0 | 10.2 | 9.8     | -1,2    |

자료: 황윤재·0동소(2014).

### 3.2.2. WTO 규정과 쟁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특히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민정· 장영주(2014)는 한국의 조치가 SPS 규범에 부합하는 지에 관해 단정해서 판단할 수 없 지만,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표 8 일본이 제기한 WTO/SPS 협정 규정

| 한국의 조치  | SPS 해당 조항               | SPS 조항 내용  |
|---|-------------------------|--|
| 조치에 관해 적절히 공표하지 않음.   | 제7조<br>부속서 B 제1문        | - 투명성: 조치의 통보 및 정보제공<br>- 규정의 공포: 이해당시국에 신속히 공표  |
| 조치의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않음.   | 제5조 제8항                 | <ul><li>수출제한,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음.</li><li>국제기준이 부재한 경우 조차에 대한<br/>해명을 요구할 수 있음.</li></ul>   |
| 조치의 목적, 위험의 성격, 위해성 평가,<br>관련 국제기준에 기반을 둔 기술적 정당성,<br>권고나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설명을<br>제공하지 않음.         | 제4조                     | 수출국과 수입국 간 조치의 동등성   |
| 문의처(enquiry point)가 질문사항에 대해<br>응답하지 않음.  | 제7조<br>부속서 B 제3문        | - 투명성: 조치의 통보 및 정보제공<br>- 문의처 존재 보장  |
| 조치가 위해성 평기에 근거하지 않음.  | 제2조 제2항<br>제5조 제1항, 제2항 | -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치 적용<br>- 국제가구의 위험평가 기술에 기초   |
| 조치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br>- 적절한 괴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br>- 잠정적으로 도입<br>- 적절한 정보에 기반<br>- 합리적 기간 후 검토 | 제6조 제7항                 | <ul> <li>괴학적 증거가 미흡할 경우 입수 가능한<br/>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br/>조치 채택 가능</li> <li>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br/>기간 내에 조치의 재검토</li> </ul> |
| 조치가 자의적이며 치별적이고 무역에 관한<br>위장된 제한임.  | 제2조 제3항                 | 비용 효율과 같은 경제 요소를 고려  |
| 조치가 자의적이며 정당화할 수 없는<br>보호수준을 설정함.   | 제5조 제5항                 | 조치가 무역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br>하는 경우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 회피   |

표 8 일본이 제기한 WTO/SPS 협정 규정 (계속)

| 한국의 조치  | SPS 해당 조항                                     | SPS 조항 내용  |
|---|---|--|
|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조치가<br>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기에 지나치게<br>무역 제한적임. | 제5조 제6항                                       | 조치가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무역을<br>제한하지 않도록 보장   |
| 조치에 의한 검사와 승인절차가 적절하거나<br>필요한 것이 아님.                        | 제8조<br>부속서 C 제(a)문,<br>제(c)문, 제(e)문,<br>제(g)문 | -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부속서 C의<br>규정 준수<br>-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br>· 수입상품이 동종 국내 상품과 불리하지<br>않게 시행<br>· 정보의 요구는 적절한 통제, 검사 및<br>승인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br>· 통제, 검사 및 승인 요건은 합리적이고<br>필요한 사항에 국한<br>· 수입품의 표본 선정은 국내 상품에<br>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 사용 |

주: SPS 협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국문: http://goo.gl/UFzVS6; 영문: https://goo.gl/pPl8qO). 자료: WTO(2015c),

- ① "방사성"이 아니라 "수산물에 포함된 방사성"이 사람이나 동식물의 건강에 미칠수 있는 음(-)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② 조치가 기반을 둔 과학적 증거는 소수 의견이더라도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라면 충분하고, 특히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 ③ 방사능을 "오염물질"로 인정할 경우 위험평가가 3단계인 "병해충"과 달리 2단계이다. 1단계는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로부터 사람의 건강에 음(-)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음(-)의 영향이 존재할 경우 그 잠재적(potential) 가능성에 관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2단계 위험평가는 3단계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개연성을 지닌다.
- ④ 호주의 연어 수입에 관한 분쟁17)에서 상소기구는 제로 위험(zero-risk)도 적정한 보호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위험평가의 결과로 수입금지도 가능함을 뜻한다.
- ⑤ 과학적 정당성이 있을 경우 국제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잠정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잠정적인 조치 이후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인 기간에 잠정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 ⑦ 한국의 조치가 WTO SPS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일본이 밝혀야 한다.

<sup>17) (</sup>DS18, https://goo.gl/E42vsT).

- ⑧ 해충(pest)이나 병(disease)과 달리 방사성 물질과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지역 화(regionalization)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18)
- ⑨ 방사능 관련 WTO 분쟁 사례가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에 관련된 국제법 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 ⑩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등도 한국과 비슷한 수입금지 또는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조치는 SPS 협정 제5조 제1항의 "여건에 따라(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적절히 취해진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① 한국에서 일본의 원자력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가 사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현실에서 수입금지와 같은 강력한 사전 규제가 타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강민지(2013)는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기준이 없는 것으 로 WTO에 통보한 점을 들어, SPS 협정 제5조19)의 규정아래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 다고 밝히고 있다(WTO 2013). 또한 한국은 본 WTO 통보문에서 "임시 안전조치 (temporary safety measure)"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수입금지가 잠정적인 조치임을 밝힌 것이며, 이에 따라 SPS 협정 제5조 제7항의 잠정조치 예외규정을 원용하여 일본 의 제2조 제2항20)에 대응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렇다면 제2조 제2항의 4가지 요건 중 특히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 한 경우인지와 이용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한 조 치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강민지(2013)는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가 과학적 증거 불충분의 요건을 엄격 히 해석해 왔고, 방사성 물질에 관한 국제 기준치가 존재함을 들어 한국에 불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면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는 기존의 위험평가의 한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실이므로 과학적 증거 불충분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모든 방사능 물질 에 관한 검사가 최대 8주까지 소요되는 점, 신선 수산물의 특성상 철저하게 검사하기 어려운 점. 오염수 통제를 일본이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잠정 조치의 타당성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같은 일본 연안에서 잡은

<sup>18)</sup> 지역화는 특정 병해충이 발생한 국가 안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발생 정도가 낮게 유지될 경우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검역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임(SPS 제6조), 본 원칙은 국제가구의 권고시항이나, 병해충 위험이 지리적 생태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관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입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한 $\cdot$ 중 FTA의 관점에서 지역화의 쟁점을 논의한 임송수 전형진(2012)을 참조하기 바람.

<sup>19)</sup>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임.

<sup>20)</sup>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임.



수산물이라도 일본산만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산이나 한국산은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될 것으로 지적하였다.

## 4. 시사점과 결론

미국의 COOL 조치와 한국의 방사능 식품 및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모두 소비자의 후생을 염두에 둔 정책이란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 후자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에 각각 근거한다.

미국의 COOL 조치는 수년에 걸친 분쟁 끝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승소로 귀결되었다. 많은 소비자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COOL 조치는 수입육에 차별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결 받았다.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정책 조치가 소비자 중심의 좋은 의도로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국제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산지 표시제 자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이것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무역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에 걸친 COOL 조치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패소한 점은 정치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육류의 아웃소싱 (outsourcing) 무역이 오래전부터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COOL 조치가 도입된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정책 조치가 이해집단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고, 낮은 경제효과를 수반한 점이다. COOL 조치에 대해 많은 소비자와 일부 생산자 단체들이 지지한 반면에 대표적인 유통과 가공 및 식품업체들은 반대하였다. 반대 논리는 명확하다. 추가 부담과 비용이 발생하여 최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또한 실제로 이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COOL에 대한 소비자들의 추가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미국산 육류의 수요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미국이 패소한 후 하원이 COOL 조치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지 무역 상대국에 의한 보복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은 아닐 것이다. 이 조치의 효과나 정당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존재함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직 상원의 판단이 남아 있 으나, 지금으로선 지금과 같은 형태의 COOL 조치 지속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산 식품과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제한조치와 이를 겨냥한 일본의 제소는 지금 까지 방사능 관련 식품안전 조치가 WTO 분쟁에서 다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 비슷한 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의 추이는 적지 않은 파급영향을 지닐 것이다.

일본은 SPS 관련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반복해서 제 시해왔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지금까지 미온적이었으나, 앞으로 법리 해석을 두 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양국의 관심사항이 높은 만큼, 또한 지금까지 양측 간 본격적인 논의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협의단계에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여지가 존재한다.

한국은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무역조치가 잠정적이며, 이용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함을 강조할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이 조치가 적절한 위험 평가와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조치임을 부각시키고, 과학적 증거에 의한 조치가 아님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법정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이번 제소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식품안전체계를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 로 노력해야 함은 자명하다.

첫째, 일본이 제소한 문건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듯이, 정부 및 관련 민간위원회가 더욱 현장실사 중심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어떠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있어서도 일관되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우려와 불신 이 큰 만큼, 의사결정에 있어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정보소통 을 더욱 촉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도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 사성 핵종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방사성 유출의 근원지인 일본이 이웃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국제기준에 의존하기 보다 과학적 기준을 근거한 더욱 엄격하고 확실한 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목표를 둬 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일본산 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정책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구매 여부는 결 국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민지. 2013.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법적 검토."「법학연구」제23권 제 4호, pp. 275~306. 한국법학회.
-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원자력안전위원회. 2015. 일본,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 관 런 WTO 양자협의 요청. 정부합동 보도참고자료. (http://goo.gl/aVefS6).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정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어부합동 보도자료. (https://goo.gl/ZHv5BT).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처 대응 및 관리 동향 48. 참고자료, 2014. 5. 22.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goo.gl/49Uhj8).
- 임송수·전형진. 2012. "한-중 FTA 협상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화(Regionalization) 규정의 적용과 의미." 「농업경영·정책연구」제39권 제4호, pp. 540~567. 한국축산경영학회.
- 정민정·장영주. 2015.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Vol. 37. 국회입법조사처.
- 최승환. 2004. "농산물무역분쟁해결에 있어서 농업협정과 분쟁해결기구의 역할."「경희법학」제39권 제2호, pp.111-143.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황윤재·이동소. 2014.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국내 농식품 소비 파급 영향」.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1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CCA). 2015. COOL Update. (http://goo.gl/H7XbhW).
- CBS News. Canada Seeks \$3B in Retaliatory Tariffs against U.S. over Meat Labelling. June 5, 2015. (http://goo.gl/Qy5u1A).
- ICTSD. 2012. "WTO Applellate Body Confirms US Country of Origin Label Illegal." *Bridges* Vol. 16, No. 26. ICTSD. (http://goo.gl/XA2EsS).
- Reuters. 2015. US Lawmakers Vote to Scrap Meat Labeling Laws. June 10, 2015. (http://goo.gl/76lVK9).
- USDA. 2015. Economic Analysis of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 Report to Congress, April 2015. (http://goo.gl/bsYzOf).
- . 2013. Rules and Regulations: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 of Beef, Pork, Lamb, Chicken, Goat Meat, Wild and Farm-Raised Fish and Shellfish,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Peanuts, Pecans, Ginseng, and Macadamia Nuts. Federal Register Vol. 78, No. 101. USDA. (http://goo.gl/RvNyXQ).
- Wall Street Journal. 2015. "House Votes to Remove Country-of-Origin Lables on Meat Sold in U.S." June 10, 2015. (http://goo.gl/H2TyNw).

WTO. 2015a. 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https://goo.gl/TZdNvC) \_\_\_\_\_. 2015b. Korea-Dairy (DS98). (https://goo.gl/Fi0z4S). \_\_\_. 2015c. Korea-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Request for Consultations by Japan. G/L/1116; G/SPS/GEN/1410; WT/DS495/1. (https://goo.gl/Rnt3fK). \_\_\_\_\_. 2013. Notification of Emergency Measures. G/SPS/N/KOR/454. (http://goo.gl/yfnIHf). \_\_\_\_\_. 2005. Understanding the WTO. (https://goo.gl/r6Wcsx).